

[일련번호: ]

# 강 원 도

##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연가가산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sup>2)</sup>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

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2)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동안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해 본 바 아래 [표 1]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총 4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를 가산한 사실이 있다.

[표]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대상	연가가산 미적용 사유	21년 연가산정			21년 연가사용				연가보상비 회수	
		법정	가산	계	사용			미사용	대상	금액(원)
					사용	연가보상	저축			
○ ○○○	정직 (20. 1. 2.~20. 2. 1.)	21	1	22	4일 04:00	12일	04:00	5일	×	0
○ ○○○	질병휴직 (20. 4.17.~20. 8.31.)	21	1	22	13일 06:30	8일	01:30	0일	○	84,440
○ ○○○	육아휴직 (19.11.19.~20. 8.31.)	21	1	22	14일 05:00	7일	03:00	0일	○	85,590
○ ○○○	신규임용 (20. 3. 16.)	15	1	16	5일 01:15	10일	06:45	0일	○	53,700
계(4명)									3명	223,73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규정에 맞지 않게 연가를 가산한 4명 중 2021년 연가를 모두 소진한 3명(○○○, ○○○, ○○○)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223,73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주의·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가족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현, ○○소방서 소방○)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급여 및 수당지출,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구조구급활동비)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3)” 에 의하면,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단위: 원)

특정업무경비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 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3”,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8. 6월~현재) 동안 아래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과 같이 휴직, 휴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 8명 2,022,810원과 구조구급활동비 1명 107,76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사고내역	사고기간	년	월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받은금액	받을금액	받은금액	받을금액
계	방호활동비 반납(8명, 2,022,810원), 구조구급활동비 반납(1명, 107,760원)								
1	○ ○○○	장기교육 (인명구조 사1급)	19.03.11.~ 19.04.12.	2019	3	170,000	54,830	28,570	28,570
					4	170,000	101,990	100,000	32,250
					5	170,000	170,000	100,000	59,990
					소계	510,000	326,820	228,570	120,810
					구분	<b>반납</b>	<b>183,180</b>	<b>반납</b>	<b>107,760</b>
2	○ ○○○	장기교육 (화재조사 관)	19.07.22.~ 19.09.13.	2019	7	170,000	115,160		
					8	170,000	0		
					9	0	96,330		
					소계	340,000	211,490		
					구분	<b>반납</b>	<b>128,510</b>		

3	○ ○○○	장기교육 (응급구조 사2급)	19.07.29.~ 19.09.27.	2019	7	170,000	153,540		
					8	170,000	0		
					9	170,000	16,990		
					소계	510,000	170,530		
	구분	<b>반납</b>	<b>339,470</b>						
4	○ ○○○	장기교육 (화재조사 관)	20.06.15.~ 20.08.07.	2020	6	170,000	79,330		
					7	170,000	0		
					8	131,620	131,610		
					소계	471,620	210,940		
	구분	<b>반납</b>	<b>260,680</b>						
5	○ ○○○	병가	20.02.17.~ 20.04.16.	2020	2	170,000	93,790		
					3	170,000	0		
		질병휴직	20.04.17.~ 20.08.31.	소계	340,000	93,790			
				구분	<b>반납</b>	<b>246,210</b>			
6	○ ○○○	병가	20.02.20.~ 20.04.15.	2020	2	170,000	111,370		
					3	170,000	0		
		질병휴직	20.04.20.~ 20.10.19.	소계	340,000	111,370			
				구분	<b>반납</b>	<b>228,630</b>			
7	○ ○○○	가사휴직	20.03.09.~ 21.01.01.	2020	3	170,000	43,870		
				소계	170,000	43,870			
				구분	<b>반납</b>	<b>126,130</b>			
8	○ ○○○	육아휴직	20.07.01.~ 20.11.30.	2021	1	170,000	0		
					2	170,000	0		
		출산휴가	20.12.01.~ 21.02.28.		3	0	5,480		
					4	5,480	0		
		육아휴직	21.03.02.~ 22.02.28.		6	170,000	0		
					소계	515,480	5,480		
구분	<b>반납</b>	<b>510,000</b>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2. 가족수당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4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

4)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그 외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양가족” 이라는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바-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에 따르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고,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연 2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내역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2] “가족수당 초과지급 내역” 과 같이 2020. 3. 16. 신규 임용된 소방○ ○○○, ○○○, ○○○에 대하여 2020. 3. 20. 3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가족수당을 임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2020년 4월분 급여지급 시 3월분 가족수당을 또다시 일할 계산하여 중복 지급하여 총 51,6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

5)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표2] 가족수당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부양가족	지급월	초과지급액			비고
				받은금액	받을금액	과지금액	
계	3명		반납			51,600	
1	○○○	○○○(부) ○○○(모)	2020. 3.	20,640	20,640	0	- 2020. 3. 16. 신규임용
			2020. 4.	60,640	40,000	20,640	
			소계	81,280	60,640	20,640	
			반납			20,640	
2	○○○	○○○(처)	2020. 3.	20,640	20,640	0	- 2020. 3. 16. 신규임용
			2020. 4.	60,640	40,000	20,640	
			소계	81,280	60,640	20,640	
			반납			20,640	
3	○○○	○○○(부)	2020. 3.	10,320	10,320	0	- 2020. 3. 16. 신규임용
			2020. 4.	30,320	20,000	10,320	
			소계	40,640	30,320	10,320	
			반납			10,32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지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에는 지급대상의 범위(결혼 또는 사망), 지급 대상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 등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축의·부의금품 집행대상의 범위가 아닌 자녀출산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표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순번	지출일자	적요	지출금액(원)	비고
1	2020. 4. 7.	축의금(○○119안전센터 ○○○ 배우자 자녀출산)	50,000	상품권
2	2020.12. 7.	축의금(○○119안전센터 ○○○ 자녀출산)	50,000	상품권
3	2021. 4. 8.	축의금(○○○○과 ○○○ 자녀출산)	50,000	상품권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 소방○ ○○○은 2017. 7. 10.부터 2020. 7. 1.까지(3년) ○○소방서 ○○○○과에서 예산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교육 등으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직원 6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초과 지급하였고, 2020. 3. 16. 신규임용자 3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초과지급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급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2,022,810원, 구조구급활동비 107,760원, 가족수당 51,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경고·주의·개선 요구

제 목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현. ○○소방서)  
소방○ ○○○(현. ○○○○과)  
소방○ ○○○  
소방○ ○○○(현. ○○단)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표-1] 현장방염성능검사 및 성적서 발급 현황

(단위 : 건)

계	18.7.1~12.31	2019년	2020년	2021년	22.1.1~현재
37	6	8	8	13	2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 ○○○는 2018. 7. 2.부터 2019. 8. 4.까지 소방○ ○○○은 2019. 8. 5.부터 2021. 7. 4.까지 소방○ ○○○는 2021. 7.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

방서 ○○○○과 ○○○○팀장으로, 소방○ ○○○은 2018. 11. 21.부터 2019. 6. 3.까지 소방○ ○○○은 2019.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과 방염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 가운데 합판·목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은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 하고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의 시료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처리기한은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출된 목재·합판을 방염성능검사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sup>6)</sup>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방염성능기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방법은 제출된 시험체를 (40±2)℃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다음 방염성능시험을 하도록 규정<sup>7)</sup>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5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하고,

6) 2012. 2. 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현 소방용품 규칙으로 개정되며 반환규정 신설됨

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에 문의한 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시험체가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는 항온건조기를 통한 건조 및 데시케이터를 이용한 수분제거와 성능시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방청(산업과)에서는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 시료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일치성 확인 강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시료 채취할 부분에 미리 방염처리업자와 영업주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 후 자필기록이 있는 시료와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업무처리 지침<sup>8)</sup>을 시달하였다.

## 2. 관계사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접수하면, 제출된 시험체를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곧바로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에서 2시간 동안 수분을 제거한 다음 즉시 방염성능시험을 하였어야 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는 경우 성능시험한 시료를 사진 등 형태의 기록물로 보존하여 제출된 시료의 진본성이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였어야 했다.

### 가. 방염성능 측정방법 미준수

○○소방서(○○○○과)에서 처리한 현장방염물품 성능검사 서류의 민원접수 일시와 성능검사 후 결과보고 시간을 비교한 결과 민원처리기한이 충분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된 시료를 항온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에서 2시간을 건조하지 않은 채 성능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표-2] 방염성능검사 측정방법 미준수 현황

순번	대상명	접수일시	발급일시	소요시간	처리기한	측정결과	성능측정최소시간	비고
1	○○○○	2018-11-27 15:00	2018-11-28 15:21	24h	2018-12-11	합격	26h 이상 (24+2)	시간 미충족

8) 소방청 산업과-5179(2014.10.16.) 「방염성능검사 업무 처리지침 알림」

2	○○○○	2021-06-24 11:30	2021-06-25 13:14	25h	2021-07-07	합격	+ 측정시간)	데시케이터 건조(2h) 미 실시
3	○○○○	2021-06-24 11:30	2021-06-25 13:16	25h	2021-07-07	합격		
4	○○○○	2021-07-22 09:30	2021-07-23 11:15	25h	2021-08-05	합격		
5	○○○○	2022-02-14 09:00	2022-02-15 10:07	24h	2022-02-25	합격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시험체를 곧바로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에서 2시간 동안 수분을 제거한 다음 즉시 방염성능시험을 함으로써 시험체의 건조와 제습을 통해 제출된 시료가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하였어야 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된 시료를 항온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이를 항온건조기 안에서 방치하였다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염성능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3] 방염성능검사 측정방법 부적정 현황

순번	대상명	접수일시	성능 검사일	발급일시	소요 기간	측정 결과	비고
1	○○○○	2018-07-13 금요일	2018-07-17 화요일	2018-07-17 화요일	4일	합격	7.13~7.16 건조
2	○○○○	2018-08-30 목요일	2018-09-07 금요일	2018-09-07 금요일	8일	합격	8.30~9.3 건조
3	○○○○	2018-08-30 목요일	2018-09-07 금요일	2018-09-07 금요일	8일	합격	8.30~9.3 건조
4	○○○○	2018-11-01 목요일	2018-11-06 화요일	2018-11-06 화요일	5일	합격	11.1~11.5 건조
5	○○○○	2018-12-21 금요일	2018-12-24 월요일	2018-12-26 수요일	5일	합격	12.21~12.24 건조
6	○○○○	2019-02-25 월요일	2019-02-27 수요일	2019-02-27 수요일	2일	합격	2.25~2.27 건조
7	○○○○	2019-02-25 월요일	2019-02-27 수요일	2019-02-27 수요일	2일	합격	2.25~2.27 건조
8	○○○○	2019-03-18 월요일	2019-03-20 수요일	2019-03-20 수요일	2일	합격	3.18~3.20 건조
9	○○○○	2019-04-26 금요일	2019-04-29 월요일	2019-04-30 화요일	4일	합격	4.26~4.29 건조
10	○○○○	2019-07-02 화요일	2019-07-04 목요일	2019-07-04 목요일	2일	합격	7.2~7.3 건조
11	○○○○	2020-09-18 16:00 금요일	2020-09-21 월요일	2020-09-21 13:36 월요일	3	합격	9.18~9.19 건조

12	○○○○	2021-02-23 09:00 화요일	2021-02-26 금요일	2021-03-02 09:22 화요일	7	합격	2.23~2.24 건조
13	○○○○	2021-05-20 목요일	2021-05-25 화요일	2021-05-25 화요일	5일	합격	5.20~5.21 건조
14	○○○○	2021-05-20 목요일	2021-05-25 화요일	2021-05-25 화요일	5일	합격	5.20~5.21 건조
15	○○○○	2021-06-03 14:00 목요일	2021-06-07 월요일	2021-06-07 11:12 월요일	4	합격	6.3~6.4 건조
16	○○○○	2021-06-03 14:00 목요일	2021-06-07 월요일	2021-06-07 11:19 월요일	4	합격	6.3~6.4 건조
17	○○○○	2021-06-03 14:00 목요일	2021-06-07 월요일	2021-06-07 14:13 월요일	4	합격	6.3~6.4 건조
18	○○○○	2021-08-25 15:00 수요일	2021-08-30 월요일	2021-08-30 11:19 월요일	5	합격	8.25~8.26 건조
19	○○○○	2021-09-30 16:30 목요일	2021-10-06 월요일	2021-10-06 월요일	5	합격	9.30~10.1 건조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방염성능검사시료 기록물 보관 부적정

서명 날인하여 제출된 시료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시료를 보호·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방서(○○○○과)에서는 제출된 시료가 현장에서 채취한 것인지의 진위여부와 성능검사에 따른 탄화면적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sup>9)</sup>을 보관하지 않은 채 관련규정에 따라 시료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 없음

4. 의견에 대한 판단 : 없음

따라서 소방○ ○○○과 ○○○의 행위는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실시한 것이며, 소방○ ○○○·○○○·○○○는 결재과정에서 민원의 접수일시와 결재시간을 통해 담당자가 기준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각 각 "경고" 및 "주의" 사유에

9) 성능검사 시료의 탄화부위를 측정하기 위해 둘레를 표기한 모눈종이 및 방염면적계 출력 인쇄물(탄화면적 및 탄화 둘레 길이 표기)만 기록물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방염성능기준 규정을 위배하여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건조 및 수분 제거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염성능검사 후 성적서를 교부한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소방○ ○○○에 대한 경고는 소방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

[주의] 결재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현장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 시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시료가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측정토록 하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제출된 시료에 대한 진위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이 보장되도록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수입증지대금 일일결산 미실시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수수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징수하고 있다.

[표-1] 수수료(도수입증지) 납부대상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제조소등 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충수검사)	지위승계	현장방염 성능검사
1.5~22만원 (변경: 설치허가 1/2)	설치허가의 1/2 (변경허가 1/4)	1만원 (10,000원 이하)	2만원	2만원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수수료(도수입증지) 납부 현황

합계	2018 7. 1. ~ 12. 3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7 (3,371,250원)	35(15) (616,250원)	47(18) (862,500원)	57(28) (1,055,000원)	40(12) (728,750원)	8(2) (108,750원)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증지'란 강원도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과 신용카드·전자결제 납부 영수증을 말하고,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하며, 도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관명, 인증연월일, 계기고유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하고,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일일결산한 후 결산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관계사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수수료를 종이 수입증지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요금계기로 납부 확인을 한 후 일일 결산을 하였어야 했고, 수입증지 수입금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였어야 했다.

한편 소방본부(○○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수입증지대금 등 세입이 2021년부터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됨에 따라 2021. 1. 13. 소방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련 업무 효율화 추진방안<sup>10)</sup>을 수립하여 수입금을 해당관서 현금금고에 일시 보관 후 매월 28일에 일괄 세입조치 하도록 시달하였다.

### 가. 요금계기 소홀

○○소방서(○○○○과)에서는 민원업무를 접수하면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

---

10) 소방장비회계과-687(2021.01.13.) 「2021년 소방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련 업무 효율화 추진 알림」

부 받은 경우 즉시 요금계기로 인영한 후 수입금을 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하였어야 했음에도, ○○○○ 관광단지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등 2건에 대하여 접수 후 최대 4일을 지연하여 요금계기를 하는 등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수입금 도 금고 납입 현황

회계연도	대상명	민원종류	민원접수일자	계기일자	수납금액	비고
2018	○○○○	현장방염 성능검사	2018-07-13 (15:20)	2018-07-17	20,000	요금계기 지연 4일
2020	○○○○	위험물 설치허가	2020-09-17 (10:00)	2020-09-18	60,000	요금계기 지연 1일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수입금 일일결산 소홀

○○소방서(○○○○과)에서는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아래 [표-4]와 같이 요금계기에 기록되는 일일전표를 출력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4] 수입금 일일결산 미 실시 현황

합계	2018 7. 1. ~ 12. 3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7 (3,371,250원)	일일결산대장 미작성	일일결산대장 미작성	일일결산대장 미작성	일일결산대장 미작성	일일결산대장 미작성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다. 수입금 금고 납입 지연

○○소방서(○○○○과)에서는 수입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5]와 같이 2020년까지는 최대 12일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고, 2021년부터는 소방본부 지침

에 따라 최대 27일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표-5] 수입금 도 금고 납입 현황

합계	2018 7. 1. ~ 12. 3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납입횟수	21 (616,250원)	31 (862,500원)	34 (1,055,000원)	28 (728,750원)	6 (108,750원)
도금고 납입	최대 11일 지연	최대 11일 지연	최대 12일 지연	최대 27일 지연	최대 27일 지연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관련자 의견 : 없음

4. 의견에 대한 판단 : 없음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강원도수입증지조례에 따라 일일결산대장 작성 및 수입금 납부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개선] 강원도수입증지조례에 따라 관서에서 징수한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일선관서에서 수입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주의·시정 요구

제 목 건축허가 동의 등 건축민원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소방○ ○○○(현. ○○○○과)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특정소방대 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소방동의와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표-1] 건축허가 동의, 착공, 완공검사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8.7.1~12.31	2019년	2020년	2021년	22.1.1~현재
건축동의	278	31	73	61	92	21
착공신고	156	21	40	33	53	9
완공검사	154	23	41	33	47	1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 ○○○은 2018. 7. 2.부터 2019. 12. 3.까지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과 건축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의 단면도·창호도 등의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등을 첨부하여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용인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침대가 있는 경우 침대 수에 종사자 수를 합한 수로 하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과 강의실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등 설치면제 요건<sup>11)</sup>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공사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sup>12)</sup>의 적법성 검토 등의 업무를 포함

1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12)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통로 등의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내부마감재료 등의 방화시설을 말함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며,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관계사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할 때에는 첨부된 창호도 등 건축도서의 피난·방화시설을 확인 하여야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했고, 완공검사나 감리결과보고서 확인을 거쳐 적법여부를 확인 후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였어야 했다.

### 가.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홀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 숙박시설에 대하여 2021. 2. 24. 건축허가 소방동의를 하였다.

감사기간 중 위 대상에 대하여 확인한바, 객실별 피난기구는 설계되었으나 피난계단이 1개소로 복도에서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층별 피난기구가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지상 9층의 건물로 연결송수관설비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동의시 연결송수관설비를 제외한 채 동의하였으며, 이후 2021. 12. 3.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수리시 연결송수관설비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2] ○○○○○○ 숙박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비 고
건물현황	R/C조 지하1층 지상9층 1동 신축 건축면적 785.8㎡, 연면적 3,725.85㎡	옥내소화전 설계로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방수구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시설자체를 면제함 객실별 피난기구만 설계되고 층별 피난기구 누락
용도구분	숙박시설(관광호텔)	
법정 소방시설	소호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자탐, 비상방송,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등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소방시설 완공검사 소홀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설해스테이 숙박시설에 대하여 2019. 2. 22.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감사기간 중 위 대상에 대하여 확인한 바, 2017. 12.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동의시 총 5개의 다중이용업소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2019. 2. 19일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최종도면 및 방염서류 등을 통하여 ○○소방서(○○○○과)에서는 지하 1층 1개소, 지하 2층 4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입점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리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중 서식 4의 34. 기타사항 확인표<sup>13)</sup>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전문의 분당 회전수는 분당 8회 이하이고 일반음식점의 수용인원이 약 93명<sup>14)</sup>으로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비상구가 기존 여단이문에서 완공시 회전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시 피난에 장애발생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13) 방염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점검항목 확인표임

14) 2019. 4. 25. 설해바(지하2층 면적 278.95㎡)로 완비증명 발급함

- 수용인원 278.95 / 3 = 92.98(약 93명)임

- 시점확인 불가하나 현재 회전문 옆에 여단이문 설치되어 피난여건 개선됨

[표-3] ○○○○○ 숙박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비 고
건물현황	R/C조 지하3층 지상6층 1동 증축 건축면적 7,832.45㎡, 연면적 24,176.30㎡	감리결과보고서에 4-34 성능시험조사표 누락 설해바(일반음식점) 비상구 여닫이문에서 회전문으로 변경 설치
용도구분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소방동의	최초 2016. 11. 10. / 설계변경 2017. 12. 04.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2017. 5. 26. (감리자 : (주)○○○○건축사사무소)	
감리결과보고	2019. 2. 19. (완공 현지확인 : 2. 20.)	
다중이용업소 입점 현황	○○노래연습장(B2), ○○바(B2), ○○베이커리(B2), ○○스크린골프(B2), ○○온천사우나(B1)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다. 소방동의를 전실제연설비 설계도서 검토 소홀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 ○○○○ ○○○○ 리  
조트 숙박시설에 대하여 2022. 1. 13. 건축허가 소방동의를 하였다.

[표-4] ○○○○ ○○○○ 리조트 숙박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건물현황	R/C조 지하1층 지상18층 1동 신축 대지면적 53,426㎡ 건축면적 7,832.45㎡, 연면적 133,574.01㎡
용도구분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소방동의	2022. 01. 13.
설계업체	(주)○○엠이씨(○○시 ○○구 ○○로 000)
법정 소방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피난기 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전실),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 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설계현황	특별피난계단 4개소, 비상용승강기 4개소에 대한 전실제연 설계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소방청(소방제도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실제연설비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완공검사까지 소방관서 담당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설비의 적정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2012. 9월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달하였다.

위 규정 IV.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설계 등 단계별 업무매뉴얼의 1. 건축허가등의 동의단계에 따르면, 계통도, 평면도, 창호도 및 상세도를 확인하여 설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출입문 누설량 등 부하계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에 따라 급기량 등이 적법하게 설계되었는지 건축허가 동의단계에서 확인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소방시설 설계업체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전실제연설비 설계시 건축 창호도의 실제 출입문 규격과 달리 창호의 규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급기량을 산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특별피난계단 전실제연 누설틈새면적 창호규격 비교

구 분	계산서 창호 규격	창호도 실제 규격	비 고
지하층	1000 x 2100 (FSD-1)	1000 x 2200 (FSD-1)	※ 전실제연 계산서상 창호의 규격을 도면상의 규격과 달리 적용하여 누설틈새면적을 실제와 달리 과소로 산정 후 누설량 및 보충량을 산정함
지상1층	1000 x 2100 (FSD-1)	1000 x 2200 (FSD-1)	
	1000 x 2100 (FSD-2)	1100 x 2200 (FSD-2)	
지상2~4층	1000 x 2100 (FSD-1)	1000 x 2200 (FSD-1)	
지상5~옥탑층	1000 x 2100 (FSD-2T)	1000 x 2100 (FSD-2T)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6] 비상용승강기 전실제연 누설틈새면적 창호규격 비교

구 분	계산서 창호 규격	창호도 실제 규격	비 고
-----	-----------	-----------	-----

지하층	2000 x 2100 (FSD-2)	1100 x 2200 (FSD-2)	※ 도면상의 창호 규격이 외여닫이임에도 쌍여닫이 로 적용하여 누설틈새면적 을 실제와 달리 과대로 산 정 후 누설량 및 보충량을 산정함
지상1층	2000 x 2100 (FSD-2)	1100 x 2200 (FSD-2)	
	2000 x 2100 (FSD-7)	1300 x 2200 (FSD-7)	
지상2~4층	2000 x 2100 (FSD-2)	1100 x 2200 (FSD-2)	
지상5~옥탑층	2000 x 2100 (FSD-2T)	1000 x 2100 (FSD-2T)	
		1100 x 2100 (FSD-3T)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관련자 의견 : 없음

4. 의견에 대한 판단 : 없음

따라서 소방○ ○○○과 소방○ ○○○의 행위는 건축민원담당자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등의 소방시설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건축허가 소방동의 업무를 처리한 소방○ ○○○과 피난·방화시설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소방○ ○○○을 각 각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하우스 숙박시설에 대하여 피난기구 설계 및 연결송수관설비 착공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경고·주의·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소방○ ○○○(현,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표1]과 같이 총194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옥외
194	-	50	40	2	8	144	2	31	26	28	55	2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sup>15)</sup>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sup>16)</sup>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sup>17)</sup>(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표2]와 같이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 허가처리를 하면서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두0000, 허가번호 00-00000-000000호)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020. 1. 29. 완공검사 시 허가사항의 상치장소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0.8m(법정거리: 5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등 4건의 설치·변경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15) ①허가(변경)신청서 ②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③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④구조설비명세표 ⑤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⑥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16) 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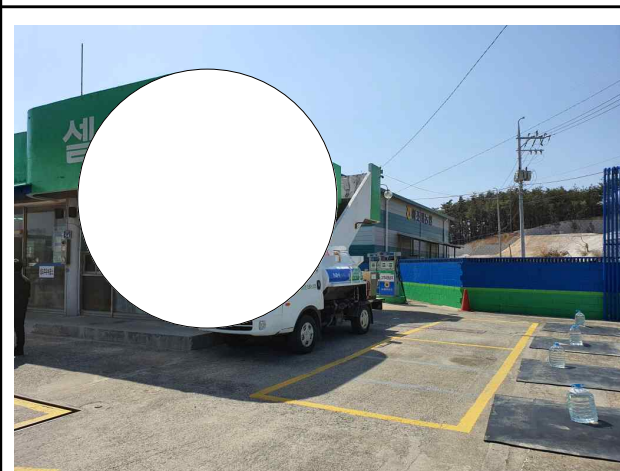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17)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현황

대상명 (차량번호)	구분	허가신청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제조사등 구분	품명	저장 용량
○○○○주유소 (00두0000)	설치 허가	2020-01-20	2020-01-29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375ℓ
○○○○주유소 (00소0000)	설치 허가	2020-06-17	2020-06-23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 (00저0000)	설치 허가	2020-06-24	2020-06-29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750ℓ
○○주유소 (00루0000)	변경 허가	2021-04-09	2021-04-13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625ℓ

[그림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부적정 사항

	
<p>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p>	<p>건축물과의 거리(80cm)</p>
	
<p>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p>	<p>건축물과의 거리(290cm)</p>

	
<p>상치장소 관련사진(○○○○)</p>	<p>건축물과의 거리(260cm)</p>
	
<p>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p>	<p>건축물과의 거리(180cm)</p>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위험물 제조소등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위험물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sup>18)</sup>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소

1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⑤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예방규정 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청 업무처리지침(2009. 3. 27.)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기본체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의 변경대상<sup>19)</sup>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예방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의 관계인 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신청 시 소방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및 예방규정 제출 시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예방규정 변경제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2021. 3. 24. ○○소방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선박주유취급소의 변경내용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이 있어 완공검사 이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예방규정을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처분 없이 위험물 규제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

※ 다만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중 보일러·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  
19) 가.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 ② 자체소방대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소방차의 증감은 제외함)
- ③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예방방법 또는 진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수반하여 예방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제출시기에 대한 지침)  
나.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표3] ○○○○선박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현황

설치자	성명	○○○○○○○○○	법인번호	000000-0000000	
	주소	○○군 ○○면 ○○리 00-7번지	연락처	033-000-0000	
설치 장소	○○군 ○○면 ○○리 0-00번지	제조소등 구분	취급소		
		저장소·취급소 구분	○○주유취급소		
변경허가번호		제00-00000-000000호	완공검사번호	제00-00000-000000호	
위험물 시설 유별·품명·최대수량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제2석유류(경유) 200,000리터 1기(지정수량의 배수 200배) ▶ 고정주유설비 등 - 고정주유기 호스릴 타입			
변경 내용	▶ 주유기실(4㎡) 신설 및 고정주유기 호스릴 타입 1대 위치 이전				
변경허가 신청일	2021. 3. 24.	완공검사일	2021. 6. 23.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2021. 6. 23.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위험물 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하고, 검토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표4]와 같이 2020. 8. 6.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위치 변경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상치장소 도면이 첨부되지 않는 등 구비서류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리하였다.

[표4]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및 신고 첨부서류 미비 현황

대상명	구분	허가신청일 /신고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서류 미비 사항
○○○주유소 (00루0000)	변경 허가	2020-08-06	2020-08-11	제00-00000-000000호	지위승계 확인서류 누락 상치장소 도면 누락
○○○○ 자동차상사 (00거0000)	용도 폐지	2020-01-28	1999-12-06	제00-00000-000000호	완공검사필증 또는 분실사유서 미첨부
육군 제0000부대	용도 폐지	2021-04-09	1985-12-13	제00-00000-000000	용도폐지 증빙 자료 미첨부
육군 제0000부대	용도 폐지	2021-04-09	1991-03-27	제00-00000-000000	용도폐지 증빙 자료 미첨부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소방본부에서 2017. 5. 25. 시달한 “강원도 사무전결규칙 소방 고유사무 자체정비 결과 알림”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는 관서장 결재사항이고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 및 “위험물 지위승계”는 팀장 전결사항으로 되어있으나, ○○소방서(○○○○과)에서는 [표5]와 같이 ○○

○○○○○○조합 이동탱크저장소(00거0000) 설치허가 서류를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설치허가 8건, 변경허가 17건, 용도폐지신고 13건, 지위승계 신고 16건 총54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결재 득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다.

[표5]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및 신고 민원서류 결재누락 현황

연번	대상명	구분	허가신청일 /신고일	처리일	결재권자	담당자
1	○○○○ (00거0000)	설치 허가	2018-08-21	2018-08-23	소방서장	○○○
2	○○○○ (00부0000)	변경 허가	2018-08-28	2018-09-03	소방서장	○○○
3	○○○○ (00부0000)	변경 허가	2018-08-28	2018-09-03	소방서장	○○○
4	○○○○ (00다0000)	변경 허가	2018-09-07	2018-09-12	소방서장	○○○
5	○○○○○	변경 허가	2018-10-15	2018-10-19	소방서장	○○○
6	○○○○○	변경 허가	2018-10-15	2018-10-19	소방서장	○○○
7	○○○○○	변경 허가	2018-10-15	2018-10-19	소방서장	○○○
8	○○○○ (00소0000)	설치 허가	2018-10-29	2018-10-31	소방서장	○○○
9	○○○○ (00부0000)	설치 허가	2019-01-09	2019-01-11	소방서장	○○○
10	○○○○ (00누0000)	변경 허가	2019-02-11	2019-02-14	소방서장	○○○
11	○○○○ (00머0000)	변경 허가	2019-05-28	2019-06-05	소방서장	○○○
12	○○○○ (00주0000)	변경 허가	2019-07-02	2019-07-08	소방서장	○○○
13	○○○○ (00고0000)	변경 허가	2019-08-01	2019-08-07	소방서장	○○○
14	○○○○ (00도0000)	변경 허가	2019-08-01	2019-08-07	소방서장	○○○
15	○○○○ (00소0000)	변경 허가	2019-08-01	2019-08-07	소방서장	○○○
16	○○○○ (00수0771)	변경 허가	2020-01-06	2020-01-10	소방서장	○○○
17	○○○○ (00두0000)	설치 허가	2020-01-20	2020-01-29	소방서장	○○○
18	○○○○ (00누0000)	변경 허가	2020-03-03	2020-03-09	소방서장	○○○
19	○○○○ (00오0000)	변경 허가	2020-03-30	2020-04-03	소방서장	○○○
20	○○○○ (00소0000)	설치 허가	2020-06-17	2020-06-23	소방서장	○○○
21	○○○○ (00저0000)	설치 허가	2020-06-22	2020-06-26	소방서장	○○○
22	○○○○	설치	2020-06-24	2020-06-29	소방서장	○○○

	(00저0000)	허가				
23	○○○○ (00러0000)	변경 허가	2020-07-16	2020-07-17	소방서장	○○○
24	○○○○ (00러0000)	변경 허가	2020-07-16	2020-07-17	소방서장	○○○
25	○○○○	설치 허가	2020-07-31	2020-08-10	소방서장	○○○
26	○○○○ (00두0000)	용도 폐지	2018-08-23	2018-08-30	팀장	○○○
27	○○○○ (옥내탱크)	용도 폐지	2018-10-26	2018-10-30	팀장	○○○
28	○○○○ (00거0000)	용도 폐지	2018-11-30	2018-12-04	팀장	○○○
29	○○○○ (00어0000)	용도 폐지	2018-11-30	2018-12-04	팀장	○○○
30	○○○○ (지하탱크)	용도 폐지	2018-11-30	2018-12-04	팀장	○○○
31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용도 폐지	2018-11-30	2018-12-04	팀장	○○○
32	○○○○ (지하탱크)	용도 폐지	2019-04-02	2019-04-04	팀장	○○○
33	○○○○ (옥내탱크)	용도 폐지	2019-05-10	2019-05-17	팀장	○○○
34	○○○○ (00거0000)	용도 폐지	2020-01-28	2020-01-31	팀장	○○○
35	○○○○ (옥외탱크)	용도 폐지	2020-04-07	2020-04-13	팀장	○○○
36	○○○○ (00도0000)	용도 폐지	2020-06-24	2020-06-26	팀장	○○○
37	○○○○ (00소0000)	용도 폐지	2020-06-24	2020-06-26	팀장	○○○
38	○○○○ (00거0000)	용도 폐지	2020-06-24	2020-06-26	팀장	○○○
39	○○○○	지위 승계	2018-08-17	2018-08-18	팀장	○○○
40	○○○○ (00어0000)	지위 승계	2018-08-22	2018-08-22	팀장	○○○
41	○○○○ (00다0000)	지위 승계	2018-09-07	2018-09-07	팀장	○○○
42	○○○○ (00너0000)	지위 승계	2018-10-11	2018-10-12	팀장	○○○
43	○○○○	지위 승계	2018-11-27	2018-11-27	팀장	○○○
44	○○○○	지위 승계	2019-01-22	2019-01-23	팀장	○○○
45	○○○○	지위 승계	2019-03-18	2019-03-19	팀장	○○○
46	○○○○	지위 승계	2019-03-28	2019-03-29	팀장	○○○
47	○○○○ (00거0000)	지위 승계	2019-08-30	2019-08-30	팀장	○○○
48	○○○○	지위 승계	2020-01-06	2020-01-06	팀장	○○○
49	○○○○ (00수0000)	지위 승계	2020-01-06	2020-01-07	팀장	○○○
50	○○○○	지위	2020-03-03	2020-03-03	팀장	○○○

	(00누0000)	승계				
51	○○○○ (00누0000)	지위 승계	2020-06-10	2020-06-10	팀장	○○○
52	○○○○	지위 승계	2020-06-23	2020-06-23	팀장	○○○
53	○○○○ (00모0000)	지위 승계	2020-06-30	2020-07-01	팀장	○○○
54	○○○○	지위 승계	2020-06-30	2020-07-22	팀장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두0000) 설치허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소0000) 설치허가”, “○○○○ 이 동탱크저장소(00저0000)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 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 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이동탱크저장소(00거 0000)” 는 용도폐지 신고서 첨부서류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용도폐지 신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및 신고 민원서류를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설치허가 7건, 변경허가 15건, 용도폐지 신고 13건, 지위승계 신고 16건 총51건에 대해 민원서류 를 미결된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과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루0000) 변경허가” 업무담당자로서 변경허가 첨부서류인 지위승계 확인서류 및 상치장소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고, “육군 제0000부대 지하탱크저장소 및 옥외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는 용도폐지 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등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업무 처리를 하며 구비서류를 충분히 검토 없이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및 신고 민원서류를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설치허가 1건, 변경허가 2건, 총3건에 대해 민원서류를 미결된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과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루 0000) 변경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선박주유취급소”는 선박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이 있어 완공검사 이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예방규정을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처분 없이 위험물 규제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주의] 위 관련자 중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라며, 소방○ ○○○,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유소, ○○○주유소, ○○○○,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에 변경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규정

을 제출토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업무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18년	15	396	7	204	2	40	6	152
2019년	15	399	7	209	2	37	6	153
2020년	15	371	7	199	2	33	6	139
2021년	15	372	7	198	2	33	6	141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1.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대원으로 2년 이상 (2022. 1. 1. 개정 전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의 자녀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2013. 1. 28. 시달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개선 지침(개정안) 알림”에 따르면 대원 자녀(2인 이상 포함)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는 해로부터 2년 이상 반복지급(선발)을 금지한다. 단, 기 선발된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되어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된 경우 다음해 지급은 가능하고 적격자가 없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반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 지급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심의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사실에 관련된 사항을 장학금 지급관리 대장에 기록·작성하여 관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3. 23. ~ 4. 1.)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161명에게 164,246천원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여성대 ○○○ 대원의 경우 2018년 상·하반기 ○○○ 학생(둘째 자녀)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19년 상반기 ○○○ 학생(첫째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자녀(2인 이상 포함)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는 해로부터 2년 이상 반복지급(선발)을 금지하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장학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기록하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장학금 지급이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년 도	지급시기	구 분	지급인원 (연인원)	지급금액	비 고
총합계			161명	164,246,010원	
2018	합 계		44명	40,104,600원	○ 장학금 1명, 1,125,790원 반납 - 대학생 1 / 1,125,790원 ※ 휴학
	상반기	대학생	17명	18,992,720원	
		고등학생	7명	4,088,200원	
	하반기	대학생	13명	12,935,480원	
고등학생		7명	4,088,200원		
2019	합 계		46명	45,545,330원	○ 장학금 1명, 1,046,400원 반납 - 대학생 1 / 1,046,400원 ※ 휴학 ○ 2년 이상 동일 대원 자녀 장학금 혜택 1명
	상반기	대학생	22명	24,030,820원	
		고등학생	3명	1,745,400원	
	하반기	대학생	18명	18,023,710원	
고등학생		3명	1,745,400원		
2020	합 계		28명	31,044,560원	○ 장학금 10명, 9,511,600원 반납 - 대학생 10 / 9,511,600원 ※ 휴학 4, 타 장학금 중복지원 6 (일부 반환) - 일부 반환 상반기 : 1명 174,560원 하반기 : 1명 324,560원
	상반기	대학생	16명	17,850,400원	
		고등학생	-	-	
	하반기	대학생	12명	13,194,160원	
고등학생		-	-		
2021	합 계		43명	47,551,520원	○ 장학금 1명, 1,126,560원 반납 - 대학생 1 / 1,126,560원 ※ 타 장학금 중복지원
	상반기	대학생	23명	25,910,880원	
		고등학생	-	-	
	하반기	대학생	20명	21,640,640원	
고등학생		-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sup>20)</sup>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sup>21)</sup>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sup>22)</sup>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3]과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p><input type="checkbox"/>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li> <li>○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li> <li>○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li> </ul>
---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3. 23. ~ 4. 1.)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의용소방대 기본교육(36시간)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1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원이 기본교육은 111명, 전문교육은 449명으로 확인되었고,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인 72명에 대하여 해임처리 21명, 사직처리 34명을 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17명(중복 12명 제외한 5명 해임조치 필요)에 대하여 해임을 하여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현황

(단위: 명)

의소대명	일반 전담	합 계			2018년(396명)			2019년(399명)			2020년(371명)			2021년(372명)		
		기본교육 이수시간 미달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 이수시간 미달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 이수시간 미달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 이수시간 미달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 이수시간 미달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전문)
	총계	111	449	8/64	12	46	5/24	34	70	0/20	25	213	2/8	40	120	1/12
○○○대	일반	17	63	1/3	2	4	0/1	10	8	0/0	2	35	0/0	3	16	0/2
○○○대	일반	9	21	2/1	1	3	1/1	3	4	0/0	1	11	0/0	4	3	0/0
○○○대	일반	5	38	1/4	2	3	2/3	2	4	0/0	1	18	0/1	-	13	0/0
○○○대	일반	6	22	1/7	-	4	0/3	4	5	0/4	1	10	0/0	1	3	0/0
○○○대	일반	7	42	0/2	-	2	0/1	2	8	0/0	2	15	1/1	3	17	0/0
○○○대	일반	4	30	1/7	-	4	0/1	3	12	0/4	1	11	1/2	-	3	0/0
○○○대	일반	9	30	0/8	-	10	0/4	3	5	0/3	2	10	0/1	4	5	0/0
○○○대	일반	4	22	0/5	1	3	0/1	1	5	0/2	1	10	0/1	1	4	0/1
○○○대	일반	10	32	3/7	2	2	2/2	1	-	0/0	3	14	0/1	4	16	0/4
○○○대	일반	4	12	0/1	-	1	0/1	-	2	0/0	2	9	0/0	2	-	0/0
○○○대	일반	4	31	0/2	1	2	0/0	-	2	0/0	1	14	0/0	2	13	0/2
○○○대	일반	13	3	0/2	1	1	0/1	2	1	0/1	7	1	0/0	3	-	0/0
○○○대	일반	7	36	0/7	-	4	0/3	-	12	0/4	-	11	0/0	7	9	0/0
○○○대	일반	4	40	0/8	1	3	0/2	1	2	0/2	-	24	0/1	2	11	0/3
○○○대	일반	8	27	1/0	1	-	0/0	2	-	0/0	1	20	0/0	4	7	1/0

주 1. 2018년 1명, 2020년 8명, 2021년 12명 총 21명 해임 처리하였음  
 주 2. 2018년 11명, 2019년 21명, 2020년 2명 총 34명 사직 처리하였음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할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

### 3.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 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sup>23)</sup>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3. 23. ~ 4. 1.) 중 2018년 6월부터 2021년 까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의용소방대 ○○○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교육훈련 시간 (17:00~21:00)과 소집명령 시간(18:20~19:20)이 중복되는 등 총 33건 52명에게 지급

---

23)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의소대명	교육훈련 일시	훈련내용	소집명령 일시	활동내용	성명	비고
1	○○○대	18-05-29 17:00~21:00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훈련	18-05-29 18:20~19:20	○○리 주택화재 현장활동 보조	○○○	대원
2	○○○대	18-10-10 18:00~22:00	한마음전진대회 선수단 교육훈련	19-10-10 17:30~18:40	○○리 주택 참고화재 출동	○○○ 외1명	부대장
3	○○○대	21-03-24 14:00~15:00	신림인접 피난요약시설 대피훈련 참가			○○○	부대장
		21-03-24 14:00~16: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4	○○○대	21-03-25 14:00~15:00	신림인접 피난요약시설 대피훈련 참가			○○○	대원
		21-03-25 14:00~16: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5	○○○대	21-03-25 14:00~15:00	신림인접 피난요약시설 대피훈련 참가			○○○	대원
		21-03-25 14:00~16: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6	○○○대	21-03-30 13:00~17:00	간이스프링클러 사전교육 및 합동설치			○○○	대장
		21-03-30 12:00~14: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7	○○○대	21-04-02 10:30~11:30	신림화재예방 동해안 주민 참여 소방훈련 참가			○○○	대원
		21-04-02 10:00~13: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8	○○○대	21-04-02 10:30~11:30	신림화재예방 동해안 주민 참여 소방훈련 참가			○○○	부대장
		21-04-02 10:00~13: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9	○○○대	21-04-02 10:30~11:30	신림화재예방 동해안 주민 참여 소방훈련 참가			○○○	대장
		21-04-02 10:00~13: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10	○○○대	21-04-02 10:30~11:30	신림화재예방 동해안 주민 참여 소방훈련 참가			○○○	대원
		21-04-02 10:00~12: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11	○○○대	21-05-13 14:00~16:00	신림화재예방 의용소방대 순찰근무			○○○	대장
		21-05-13 09:00~16:00	예방접종센터 지원				
12	○○○대	21-11-15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5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대원
13	○○○대	21-11-09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09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14	○○○대	21-11-17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7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15	○○○대	21-11-17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7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16	○○○대	21-11-17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7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대원
17	○○○대	21-11-17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7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18	○○○대	21-11-16	11월 정기교육	21-11-16	동절기 야간근무	○○○	대원

		18:30~22:30		20:00~22:00	및 순찰	외 1명	
19	○○○대	21-11-16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6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0	○○○대	21-11-15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15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1	○○○대	21-11-08 19:00~23:00	11월 정기교육	21-11-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2	○○○대	21-11-07 18:00~22:00	11월 정기교육	21-11-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3	○○○대	21-12-08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4	○○○대	21-12-06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6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5	○○○대	21-12-08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6	○○○대	21-12-08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부대장
27	○○○대	21-12-08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8	○○○대	21-12-08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8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29	○○○대	21-12-09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9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30	○○○대	21-12-09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9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대원
31	○○○대	21-12-06 18:30~22:30	12월 정기교육	21-12-06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32	○○○대	21-12-07 19:00~23:00	12월 정기교육	21-12-07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외 1명	대원
33	○○○대	21-12-04 18:00~22:00	12월 정기교육	21-12-04 20:00~22:00	동절기 야간근무 및 순찰	○○○	대원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 소방○ ○○○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자로서 의용소방대 기본교육(36시간) 및 전문교육(12시간)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원 중 해임 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인 72명에 대하여 21명 해임처리 하는 등 현재까지 5명에 대한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 33건 52명에 대해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5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여비 572,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강 원 도

##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내119안전센터

관 련 자 ○○소방서 ○○센터 소방○ ○○○(현, ○○소방서 ○○센터 소방○)  
소방○ ○○○(현, ○○소방서 ○○센터 소방○)  
○○소방서 ○○센터 소방○ ○○○  
○○소방서 ○○센터 소방○ ○○○(현, ○○소방서 ○○대)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표1] 과 같이 총 241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양양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장치 (지상식 포함)
		241	240	1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1.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연2회(해빙기, 동절기) 정밀조사,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 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 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대체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3. 23. ~ 4. 1.)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총 26개소 중 7개소(2019년 4개소, 2020년 2개소, 2021 1개소)의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

연번	년도	관할	용수번호	고장발생 보고일	조치 완료일	대체용수 지정여부	전 직원 전파 여부
1	2019	○○	○○000호	2019-01-29	미상	X	X
2	2019	○○	○○000호	2019-02-25	미상	X	X
3	2019	○○	○○000호	2019-08-12	2019-08-23	X	X
4	2019	○○	○○000호	2019-09-15	2019-10-02	X	X
5	2020	○○	○○000호	2020-08-29	2020-10-25	X	X

6	2020	○○	○○000호	2020-08-29	2020-10-25	X	X
7	2021	○○	○○000호	2021-01-27	2021-02-25	X	X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000호의 경우 2019. 3. 24. 비상소화장치함 교육훈련 중 스피들 개폐 불량사항을 발견하였으나 2019년 3월 ~ 4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총 4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표2] 고장발생 용수시설 소방용수조사부 부적정 작성 현황

연번	년도	관할	용수번호	고장발생 보고일	고장사유	조사부 부적정 사항	담당자
1	2019	○○	○○000 호	2019-03-24	소화전 개폐 밸브 불량	2019년 3월 ~ 4월 양호로 작성	○○○
2	2019	○○	○○000 호	2019-11-06	몸통부위 누수	2019년 11월 양호로 작성	○○○
3	2021	○○	○○000 호	2021-11-23	몸통부위 누수	2022년 1월 ~ 2월 양호로 작성	○○○
4	2021	○○	○○000 호	2021-12-24	몸통부위 누수	2021년 12월 ~ 2022년 3월 양호로 작성	○○○,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3]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3]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 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li> <li>•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li> <li>•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li> </ul>
516의 4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li> <li>•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li> <li>•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li> </ul>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정밀조사,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

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 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3. 23. ~ 4. 1.)중 소방용수시설 【지상식소화전 240개소(비상소화장치 176개소 포함), 지하식소화전 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4] 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 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4]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구획선 설치 현황

연번	관할	관리번호 (위 치)	사진
1	○○센터	○○010호 (○○로 0000)	
2	○○센터	○○000호 (○○로 00)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9. 2. 21.부터 2019. 6. 12.까지 ○○○00호의 소방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2019. 3. 24. 비상소화장치합 교육훈련 중 스프링들 개폐 불량사항을 발견하였으나, 2019년 3월 ~ 4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2019. 6. 12.부터 2020. 4. 16.까지 ○○○00호의 소방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2019. 11. 6. 비상소화장치 교체설치 점검 중 소방용수시설 제수변 누수를 발견하였으나, 2019년 11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2. 1. 17.부터 3. 26.까지 ○○○00호의 소방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2019. 11. 23. 소방○ ○○○이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를 하며 소방용수시설 개폐핸들 개방 시 몸체에서 누수를 발견하여 소방용수조사부에 누수사항을 작성하였으나, 소방○ ○○○은 2022년 1월 ~ 2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소방서 119구조대(前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1. 10. 1.부터 2022. 1. 16.까지 ○○○00호의 소방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2021. 12. 24.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를 하며 소방용수시설 개폐핸들 개방 시 몸체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으나, 2021년 12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2. 1. 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호의 소방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2021. 12. 24. 소방○ ○○○이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를 하며 소방용수시설 개폐핸들 개방 시 몸체에서 누수를 발

견하였으나, 소방○ ○○○은 2022년 1월 ~ 3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군청 관계부서와 빠른 기간 내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